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10월 15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7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인사기록은 신규임용 후 최초 “별지 제7호서식”에 작성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통합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/ 유지한다.

[별표 1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구조화 면접	직무수행능력 (전공평가), 실기시험 병행 가능
기능직			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)		

※ 인사위원회 심의/의결을 거쳐 시험과목 변경(추가) 가능

[별표 2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

구분	세분	가산점수	비고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인사기록) ① <생략> ②인사기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 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“별지 제7호 서식”에 작성한다.</p>	<p>제16조(인사기록) ① <현행과 같음> ②인사기록은 신규임용 후 최초 “별지 제7호 서식”에 작성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통합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/ 유지한다.</p>

현 행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<u>NCS직업기초능력</u> (<u>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</u> <u>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</u> <u>직업윤리</u>)	<u>NCS 기반 면접</u>	직무수행능력 (전공평가), 실기시험 병행 가능
기능직	<u>NCS직업기초능력</u> (<u>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</u> <u>문제해결능력, 기술능력,</u> <u>직업윤리</u>)	<u>NCS 기반 면접</u>	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<u>의사소통능력, 대인관계능력,</u> <u>직업윤리</u>)	<u>NCS 기반 면접</u>	

개정안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<u>NCS직업기초능력</u> (<u>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</u> <u>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</u> <u>직업윤리</u>)	<u>NCS 기반</u> <u>구조화 면접</u>	직무수행능력 (전공평가), 실기시험 병행 가능
기능직			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<u>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</u> <u>직업윤리</u>)		

※ 인사위원회 심의/의결을 거쳐 시험과목 변경(추가) 가능

현 행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

구분	세분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고
국가 유공자	보훈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	관련법령에 의거 가산점 부여	<p>(1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</p> <p>(2)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.</p> <p>(3)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</p>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행정사, 기능장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

개정안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가산점수

구분	세분	가산점수	비고
<u>자격(면허)</u> <u>소지자</u>	<u>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</u> <u>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</u> <u>노무사</u>	<u>필기시험의 각</u> <u>과목별 만점의 5%</u>	<u>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</u> <u>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</u>
	<u>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</u>	<u>필기시험의 각</u> <u>과목별 만점의 3%</u>	